



양 주 시



수신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관리 철저 안내

1. 귀 시설(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방문요양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어르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진정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에 따른 “방임학대”에 해당하며, 학대 행위자는 같은법 제55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해당 방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부당 청구한 급여비용 전액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불시에 노인학대 및 현지조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

양 주 시



노인시설팀장 이석훈 사회복지과장 전영 2024. 12. 3.
김광숙

협조자 주무관 김시연 주무관 서민준 주무관 우종현 주무관 김현선

시행 사회복지과-52664 (2024. 12. 3.) 접수

우 11496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 www.yangju.go.kr

전화번호 031-9082-5720

팩스번호 0505-041-0813

/ portrait100@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금품, 향응, 편의수수 NO!, 깨끗한 양주조직 Yes! 비위공직자 신고센터